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

공보담당 차장검사 김민아

전화 041-620-4322 / 팩스 041-620-4452

보도자료

2024. 9. 2.(월)

제목

농협 임원 선거에서 현금 살포한 농협 이사 1명 구속기소 등 총 18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최성수)는 '24. 2. 실시된 000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150만 원을 제공한 농협 이사 A를 직접 구속하여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대의원 7명에게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금품선거 비리 관련 후보자 및 대의원 18명을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금품선거비리 사건에 대해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부인하는 A 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하여 A 이사를 구속하고, 후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·기소하여 금품선거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.
- 천안지청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선거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.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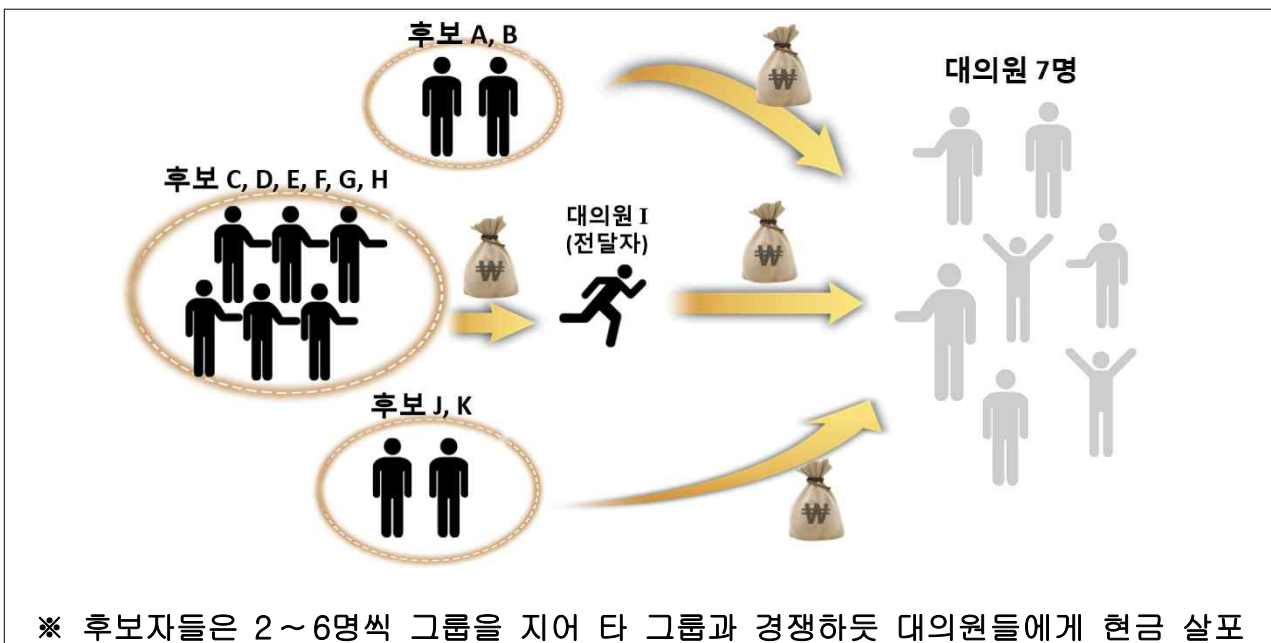
- ○○○농협 이사 A 등 금품제공자 11명(경찰 송치)
- 금품 수수한 농협 대의원 7명(검찰 인지)

● 공소사실 요지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

- '24. 2. 29. 실시된 ○○○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, '24. 2. 하순경 이사 후보자 A(당선)는 감사 후보자 B(당선)와 함께 임원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150만 원을 제공하였음
- A, B를 비롯하여 임원 선거 후보자 10명과 대의원 1명은 2~6명씩 그룹을 지어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였음
- 대의원 7명은 각자 적게는 1명, 많게는 3명으로부터 1인당 30~65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음

※ 구체적 공소사실은 별첨 참조

● 범행 개요



II

주요 수사경과

- '24. 7. 1. 피의자 A 등 12명, 농협법위반 사건 송치
- '24. 8. 21. 검찰, 피의자 A에 대한 직접 구속영장 청구 / 8. 23. 발부
- '24. 8. 26. 금품수수자 7명 인지
- '24. 8. 28. 18명 기소(1명 구속, 17명 불구속), 1명 기소유예


III

수사 결과

- 후보자들끼리 그룹을 지어 금품살포 경쟁을 벌인 범행 전모 규명
 - ○○○농협은 이번에 이사, 감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되었고, 대의원 1명이 여러 표를 동시에 투표하는 방식이어서 후보자들끼리 그룹으로 뭉쳐 선거운동에 나섬
 - 수사한 결과, 선거 후보자들이 2~6명씩 그룹을 지어 타 그룹과 경쟁하듯 대의원들에게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사실 확인
- 검찰 보완수사로 A 이사 직접 구속
 - 공소시효(8. 29.) 임박하여 불구속 송치된 후,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증거물 분석, 통화내역 추가 확보 등 신속하고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음
 - 혐의를 부인하는 A 이사가 중요 참고인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하였음
- 죄의식 없이 만연히 현금 수수한 대의원 7명 추가 입건·기소
 - 대의원 중에는 서로 다른 후보자 3명으로부터 중복하여 현금을 수수한 경우도 확인되었음
 - 지역농협의 '돈선거'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자 7명도 입건하여 기소하였음

IV

향후 계획

- 천안지청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

[별첨]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(범행일시 : '24. 2. 하순경)

순번	피고인	지위	금품수수 범죄사실 요지	처분	
1	A	이사 당선자	- [A·B가 공모(①그룹)] 대의원 L, N, O, P, R에게 현금 30만원씩 제공(5명 150만원)	검찰 직접구속 기소	
2	B	감사 당선자	- [A 단독] 대의원 1명에게 시가 3만원 사과 제공 - [B 단독] 대의원 M에게 현금 30만원 제공(1명 30만원)		불구속 기소
3	C	감사 당선자	- [C·D·E·F·G·H가 공모(②그룹)] 대의원 I에게 150만원 제공(1명 150만원) - [E 단독] 대의원 O에게 현금 15만원 제공(1명 15만원)	불구속 기소	
4	D	이사 당선자			
5	E	감사 낙선자			
6	F	이사 당선자			
7	G	이사 낙선자			
8	H	이사 당선자			
9	I	대의원 (전달자)			친구 E가 속한 ②그룹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, 대의원 P, Q에게 현금 30만원씩 제공(2명 60만원) 하고 나머지 90만원은 임의 소비
10	J	이사 낙선자			[J·K가 공모(③그룹)] 대의원 O에게 현금 20만원 제공(1명 20만원)
11	K	이사 당선자			
12	L	대의원	①그룹으로부터 30만원 수수(1회 30만원)	불구속 기소 (7명 검찰 인지)	
13	M	대의원	B로부터 30만원 수수(1회 30만원)		
14	N	대의원	①그룹으로부터 30만원 수수(1회 30만원)		
15	O	대의원	①그룹으로부터 30만원, E로부터 15만원, ③그룹으로부터 20만원 수수(3회 65만원)		
16	P	대의원	①그룹으로부터 30만원, ②그룹을 대리한 I로부터 30만원 수수(2회 60만원)		
17	Q	대의원	②그룹을 대리한 I로부터 30만원 수수(1회 30만원)		
18	R	대의원	①그룹으로부터 30만원 수수(1회 30만원)		